

# 職務發明 補償制度

○○○○ 株式會社〈事例〉

## 職務發明補償規程

(197. 規定 第 制定 號)

### 第1章 總 則

#### 第1條 (目 的)

이 規程은 特許法 제15조 및 제16조의 規定에 의한 職員の 職務發明에 關하여 規定함으로써 이를 保護 奨勵하며 研究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特許권을 합 理적으로 管理 運營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規定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職원이 그 직무에 關하여 발 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자의 업무에 속 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職원의 임무에 속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規定에 의한 발명 이 외에 職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職원을 말한다.

#### 第3條 (權利的 會社承繼)

- ① 회사는 발명자가 한 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회 사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 인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 분만을 승계한다.

#### 第4條 (發明者에 대한 補償)

회사는 전조의 規定에 따라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이 規定에 정하는 바에 따라 補償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第5條 (補償金の 管理)

전조의 規定에 의한 補償금 지급에 關한 사항은 기획 管理담당부서장이 關장한다.

### 第2章 特許出願 및 登錄

#### 第6條 (發明의 申告)

職원이 자기 가 맡은 업무와 關連된 발명을 한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기획 管理담당부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第7條 (假承繼의 決定)

전조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면 그 발 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 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 第8條 (權利的 讓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다.

#### 第9條 (出 願)

- ① 전조 規定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 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 ② 전항에 의한 특허출원은 사장명의로 한다.

#### 第10條 (發明者의 特許出願)

- ① 발명자는 제7조의 規定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 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한다.

### 第11條 (審 議)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 의회를 소집,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직무발명의 회사승계 여부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결정

### 第12條 (特許權의 登錄)

- ① 직무발명으로서 회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획관리담당부서장은 이를 관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관제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회사명의로 특허등록을 한다.
- ② 회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 第3章 補 償 金

### 第13條 (登錄補償金)

회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특허권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3. 의장권은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

### 第14條 (特許權의 處分補償金)

회사 특허권을 양도·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 한 경우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회사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 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금액

### 第15條 (特許權의 處分通知)

관제담당부서장은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기획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고한다.

### 第16條 (處分補償金의 支給)

기획관리담당부서장은 전조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특허권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을 요청하여 결정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第17條 (補償金의 支給區分)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 第18條 (退職 및 死亡 後의 補償)

-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第19條 (補償金의 不返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章 委 員 會

### 第20條 (委員會 設置)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第21條 (委員會의 構成)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사장, 부위원장은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전 이사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간부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第22條 (委員長)

-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담당이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第23條 (委員會의 審議事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회사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회사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한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第24條 (委員會의 議事 等)**

-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第25條 (幹 事)**

-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기획관리담당부서장이 되며 간사의 실무 보조는 기술조사과에서 담당한다.

**第 5 章 補 則**

**第26條 (自由發明의 承繼)**

-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3조 내지 제19조, 특허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4조 내지 제19조를 각각 준용한다.

**第27條 (發明者의 義務)**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회사 또는 실시를 하여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第28條 (秘密保持)**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第29條 (實用新案 및 意匠에 관한 準用)**

이 규정은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第30條 (發明狀況報告)**

발명에 관한 승계 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상황을 상공부장관에 보고 한다.

**附 則**

-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규정 공포당시 직원의 직무발명으로 특허출원된 것은 이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

**職務發明補償規程施行細則**

(197. 세칙 제 제정 호)

**第1條 (目 的)**

이 세칙은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發明의 申告)**

- ① 규정 제6조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직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 설명서
3. 발명명세서

- 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식은 별표 1과 같다

- ③ 발명의 성질 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업무

발명당시 직무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성질

당해 발명이 소속사업소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

관지어 기술한다.

### 3. 직무발명여부

제1.2호에 따라 당해 발명이 소속사업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직원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자유발명이라고 기술한다.

### 4.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 5.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그 발명을 회사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 6. 서명 날인

기술인(발명자) 이 서명 날인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 1. 발명의 명칭

발명의 명칭은 그 발명의 내용을 간단히 표시한다.

#### 2. 도면의 요약

####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에 관한 기술분야에서 보통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그 발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구성, 작용, 효과 및 실시방법을 기재하고 특허청구 범위의 기재사항의 의의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 4. 발명 상호간의 관계

발명 상호간의 관계에는 상호 견련(牽連)관계에 있는 발명에 있어서는 그 견련관계를 다른 특허 및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실시할 수 없는 발명에 있어서는 그 실시의 형태를 기재한다.

5. 도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적성 첨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도면에는 발명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 날인한다.

나. 도면에는 발명의 모든 특징을 표시하여야 하고 발명이 이미 공지된 부분의 개량일 때에는 공지된 부분과 신규인 부분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신규 부분에 관련된 부분만을 표시한다.

### 第3條 (假承繼 決定)

규정 제7조에 따른 가승계의 결정은 사장이 한다.

### 第4條 (申告前 出願)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규정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규정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한다.

### 第5條 (審議 要請)

①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발명명세서
2. 검토서
3. 특허증 사본

② 전항 제2호의 검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처, 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 3. 등록보상금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 4. 기 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第6條 (變動事項 通知)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기획관리담당부서장에게 통지한다.

1. 당해인의 신상등의 변경사항
2.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第7條 (自由發明 讓渡申請)

①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관리담당부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식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준하여 기술한다.

### 附 則

①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발명자 명의로 특허출원한 것 또는 이미 특허등

특된 것은 규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긴급출원으

(별표 1) 발명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본적							
주소							
소속	현재			직위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성질	직무발명, 자유발명		
발명의명칭							
직무발명보상규정 제6조 및 동 시행세칙 제2조에 따라 발명을 신고 합니다. 첨부: 발명명세서 1부.  신고 년월일  신고인 <span style="float: right;">㉠</span>  사 장 귀 하							

로 보고 동조 제2항을 준용한다.

(별표 2)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본적							
주소							
소속	현재			직위	현재		
	발명당시			발명당시			
발명의종별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발명의내용			
발명의명칭							
직무발명보상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발명(특허권)을 회사에 양도 하고자 합니다. 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특허증사본 1부.  19 . . . . . 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span>  사 장 귀 하							

5面에서 계속—

어떤 企業人은 사전검토 없이 物品의 제조판매를 하다가 특허분쟁이 야기되니까 同業者協會를 등에 업고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고 있지만 동업자단체를 등에 업었다고 하여 法の 보호를 받는다고 하면 오산이다.

경영자는 最新의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도 特許政策의 一環으로 생각하고 이를 서둘러야하며 反對로 下部의 특허담당자는 企業內 全技術陣의 頭腦속에 潛在하는 기술상의 아이디어를 蒐集, 整理하여 「노른자위」의 발전에 힘써 이를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특허담당자는 國內의 價値있는 특허정보를 시시각각으로 경영자에게 보고하여 세계의 技術水準과 기술의 방향을 探知케하여 자사의 기술개발에 정확하고 신속한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것들은 경영자나 특허담당자들에게 주어진 最少限度의 특허관리인 것이다.

특허관리는 販賣政策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완전한 시장조사 또는 새製品の 市場化 調査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經濟調査機關은 특허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판매정책을 考慮하여 현재 우리시장에서 무엇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기술개발에

의한 새제품의 需要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를 조사분석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조사분석은 販賣擔當者 또는 調査部員에 의하여서도 판단된다. 판매담당자 또는 조사부원의 情報提供은 경영자로 하여금 라이선스의 收容, 許與, 企業化의 방침 등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특히 輸出 第一主義를 指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海外駐在員에게 一定期間 特許情報 蒐集方法에 관한 교육과 訓練을 실시하여 새로운 海外의 기술정보를 계속하여 本社에 보고하도록하고 본사에서는 기술정보나 특허정보를 처리 소화시킬 수 있는 特許情報狀況室을 설치, 24時間 稼動할 수 있게하여 蒐集되는 情報를 分野別, 專門別로 분석검토하며 有益한 정보는 中央研究機關에 보내어 次元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體系의이며 有機的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이때 自社內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高水準의 기술은 科學技術研究所나 그 외에 大學附設의 研究機關에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方法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特許分野에 대한 기업의 再編成을 構造的으로 消化시킬 수 있는 기구와 人員을 擴充하여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미래의 특허전쟁에 對備해야 할 것이다.